

## 야생동물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"√"표시를 합니다.  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일	처리기간	3일
승계를 하는 자	성명(법인명)	주민등록번호(법인등록번호)		
	주소(주된 사무소의 소재지)	전화번호		
승계를 받는 자	성명(법인명)	주민등록번호(법인등록번호)		
	주소(주된 사무소의 소재지)	전화번호		
영업장	상호(명칭)	승계 전	승계 후	
	주소			
	영업 종류	[ ]야생동물 판매업 [ ]야생동물 수입업 [ ]야생동물 생산업 [ ]야생동물 위탁관리업		
	허가번호			
승계사유	[ ]양도·양수 [ ]상속 [ ]합병 [ ]그 밖의 사유( )			

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의7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8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 영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### 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구분	양도·양수의 경우	상속의 경우	양도·양수 또는 상속 외의 경우	수수료
첨부 서류	1. 양도·양수 계약서 사본 등 양도·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. 양도인의 인감증명서, 「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(양도인이 방문하여 본인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)	상속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 상의 정보만으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)	해당 사유별로 야생동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	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(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2.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	가족관계등록전산 정보(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등기사항에 관한 정보로 한정합니다)	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	

###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앞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주민등록표 초본 및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(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등록사항에 관한 정보로 한정합니다)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※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.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###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

1. 야생동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.
2. 승계를 하는 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관련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다른 방법으로 지위승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3. 영업장의 영업 종류란은 야생동물 판매업, 야생동물 수입업, 야생동물 생산업, 야생동물 위탁관리업 중 해당되는 업종란에 √ 표시를 하고, 여러 업종을 동시에 신청하려면 해당되는 업종 모두에 √ 표시를 해야 합니다.

### 처리절차

